

파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하지석동 상수도 확장공사)

1. 총 관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점검비용	구분		평가방법
1천만원 미만	수행능력	-	
	가격점수	100점	◦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수행능력	40점	◦ 평 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가격점수	60점	◦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1억원 이상	수행능력	60점	◦ 평 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60(\text{점})$
	가격점수	40점	◦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가격점수 평가기준	배점기준	점수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평균	90%미만	해당배점의 100%
	90%이상 95%미만	해당배점의 98%
	95%이상 100%미만	해당배점의 96%
	100%이상 105%미만	해당배점의 94%
	105%이상	해당배점의 92%

3.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기준

<평가기준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25)	등 급	-
		경 력	12
		실 적(건수)	7
		실 적(금액)	6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등 급	3
		경 력	7
		실 적(건수)	5
		실 적(금액)	5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20)	건 수	10
		금 액	10
	【소계】		【20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미흡 (-0.3점), 불량 (-0.5점), 매우불량 (-0.7점)	6
	업무정지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6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5점】
[라]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인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소계】		【10점】
[마] 안전점검 횟수	안전점검 횟수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안전점검 횟수 이상의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횟수 평가 (상대평가)	10
	【소계】		【10점】
【총계】			【10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	(25)						
	(가)등급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나)경력	12	1억이상	10년이상 12	10년미만 ~9년이상 10.8	9년미만 ~8년이상 9.6	8년미만 ~7년이상 8.4	7년미만 7.2
			1억미만	7년이상 12	7년미만 ~6년이상 10.8	6년미만 ~5년이상 9.6	5년미만 ~4년이상 8.4	4년미만 7.2
	(다)실적 [최근5년]	건수	1억이상	14건이상 7	14건미만 ~12건이상 6.3	12건미만 ~10건이상 5.6	10건미만 ~8건이상 4.9	8건미만 4.2
			1억미만	10건이상 7	10건미만 ~8건이상 6.3	8건미만 ~6건이상 5.6	6건미만 ~4건이상 4.9	4건미만 4.2
		금액	1억이상	8억이상 6	8억미만 ~7억이상 5.4	7억미만 ~6억이상 4.8	6억미만 ~5억이상 4.2	5억미만 3.6
			1억미만	7억이상 6	7억미만 ~6억이상 5.4	6억미만 ~5억이상 4.8	5억미만 ~4억이상 4.2	4억미만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가)등급	3	1억이상	토목특급기술자 3	토목고급기술자 2.5	토목중급기술자 2		
			1억미만	토목고급기술자 3	토목중급기술자 2.5	토목초급기술자 2		
	(나)경력	7	1억이상	7년이상 7	7년미만 ~6년이상 6.3	6년미만 ~5년이상 5.6	5년미만 ~4년이상 4.9	4년미만 4.2
			1억미만	5년이상 7	5년미만 ~4년이상 6.3	4년미만 ~3년이상 5.6	3년미만 ~2년이상 4.9	2년미만 4.2
	(다)실적 [최근5년]	건수	1억이상	11건이상 5.0	11건미만 ~9건이상 4.5	9건미만 ~7건이상 4.0	7건미만 ~5건이상 3.5	5건미만 3.0
			1억미만	8건이상 5.0	8건미만 ~6건이상 4.5	6건미만 ~4건이상 4.0	4건미만 ~2건이상 3.5	2건미만 3.0
		금액	1억이상	5억이상 5.0	5억미만 ~4.5억이상 4.5	4.5억미만 ~4억이상 4.0	4억미만 ~3.5억이상 3.5	3.5억미만 3.0
			1억미만	4억이상 5.0	4억미만 ~3억이상 4.5	3억미만 ~2억이상 4.0	2억미만 ~1억이상 3.5	1억미만 3.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0]						
	(1) 건수 [최근5년]	10	1억이상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10	9	8	7	6
			1억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0	9	8	7	6
	(2) 금액 [최근5년]	10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 3억이상	3억미만 ~ 2억이상	2억미만
				10	9	8	7	6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 2억 이상	2억미만 ~ 1억 이상	1억미만
				10	9	8	7	6
다. 신용도		[15]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6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또는 ‘불량’ ,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6	- 수행기관,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구분</td><td>4건이하</td><td>5건</td><td>6건</td><td>7건</td><td>8건이상</td></tr><tr><td>점수</td><td>6</td><td>5.5</td><td>5</td><td>4.5</td><td>4</td></tr></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6	5.5	5	4.5	4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6	5.5	5	4.5	4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구분</td><td>4건이하</td><td>5건</td><td>6건</td><td>7건</td><td>8건이상</td></tr><tr><td>점수</td><td>4</td><td>3.5</td><td>3</td><td>2.5</td><td>2</td></tr></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4	3.5	3	2.5	2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4	3.5	3	2.5	2										
마. 안전 점검 횟수		[10]													
	안전점검 횟수 (상대평가)	10	- 안전관리계획서 상(또는 시공사 계획)의 안전점검 횟수 이상의 수행 기관의 안전점검 횟수를 상대평가												

※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수행기관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수행기관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파주시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수행기관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해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파주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 수행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평가 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상기 구비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선정된 수행기관의 실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적·유사용역 등 서류 허위기재 : “실격”
6. 파주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파주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2호에 따라 통보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기한 내(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파주시는 선정된 수행기관이 해당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 반드시 동일가격으로 계약체결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파주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초기점검과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일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 수행능력 및 가격점수의 평가점수 합계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 수행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우선순위로 하고, 가격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1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 본 기준은 파주시에서 발주 및 인·허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적용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개별 발주 및 인·허가부서의 공사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 항목, 요소, 배점,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주) 1. ()는 참여업체수가 3개일 시 적용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 ○○직무(전문)분야

나. 기타 분야 : ○○직무(전문)분야, ○○직무(전문)분야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분야(○○)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ex) 실적(건수) 배점

1억이상	14건 이상	12건 이상 ~14건 미만	10건 이상 ~12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8건미만
	7	6.3	5.6	4.9	4.2

- 예1)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4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4건 = 9건.

⇒ 평가점수 4.9점

- 예2)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10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7건 = 12.건.

⇒ 평가점수 6.3점

※ 기타 분야 용역 실적건수가 8건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그대로 인정하고, 8건 이상일 경우에는 7건으로 산정.[배점 만점인 7점의 60%인 4.2점에 해당하는 구간(8건 미만)의 최대치가 7건]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분야이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 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 가능한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참여기술자 명단 첨부)만 인정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수행기관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발주자가 발주청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수행중인 용역
증빙 서류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행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는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건수, 금액)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하며, 일부 차수를 수행한 경우 전체 차수에 대한 해당 차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ex) 교량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총3차) 중 1차(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실시의 경우
⇒ 유사용역 실적(건수) 0.33건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처분(‘미흡’ 또는 ‘불량’, ‘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수행기관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 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¹⁾,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 이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및 기타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 라. 발주청(인·허가기관)에서는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마. 발주청(인·허가기관)에서는 ‘라.’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 또는 제출된 평가서에 대해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오류,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8. 안전점검 횟수

- 가. 안전점검 횟수의 상대평가 방법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안전점검 횟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한다.
- 나. 다만, 수행기관이 제출하는 안전점검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시공사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횟수 이상을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참고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참고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예시)

사업명		
가격제안	금 원정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도 의 의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